

「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8.28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3. 9. 10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3. 9. 10(화)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-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 수입 증지 등을 도입하여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결제 수단이 현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을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수수료를 현행 “현금”에서 “현금 또는 전자결제”로 변경하고

『전자정부법』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

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

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“여러사람”을 각각 “여러 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전자결제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전자정부법」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 중 “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